

『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6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6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6월 21일

제2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김 구 연

나. 제안이유

-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에 대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,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“청년창업자”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○ 특례보증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5조)

· 지원 대상 : 소상공인

· 지원 내용

- 지원 한도 : 소상공인 1명당 2천만원 이내 → 3천만원 이내

※ 청년창업자 지원 신설 : 1명당 5천만원 이내

- 청년창업자, 착한가격업소, 신용등급 관계없이 지원

- 지원 기간 : 5년 이내

○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· 지원 대상 : 특례보증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

· 지원 내용

- 지원 한도 : 특례보증 융자금 이자 중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

- 지원 기간 : 2년 이내

○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

「은행법」, 「농업협동조합법」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,

「상호저축은행법」, 「새마을금고법」,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영 수

○ 본 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소상공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특례보증 지원 한도 증액 및 청년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